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교육 안내

대구광역시북부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2013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교육·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북부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소개와 「교육계획안」을 참고하시고 교육참가 자격, 교육신청 방법과 교육이수 기준 등 유의사항 안내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교육 참가를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지원사업

□ 발달장애인과 공공후견인

- 가.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말하며 장애등급은 심한장애(1~3급),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까지로 구분됩니다.
- 나. 발달장애인은 주위로부터 학대·방임이나 경제적·정서적·신체적·성적으로 착취나 희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이러한 위험에 처하거나 희생되지 않도록 도움을 줄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 「공공후견인」은 후견인 중 공익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추천하여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를 말합니다.

□ 공공후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 가. 등록기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
- 나. 유타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선임 절차

- 가. 발달장애인 개인이 후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 나. 이 때 피후견인(발달장애인)과 후견인 후보자를 함께 추천하게 됩니다.
- 다. 후견인 후보자는 공공후견인 교육·지원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우선 추천 됩니다.
- 라. 가정법원에서 해당 피후견인(발달장애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후견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 마. 공공후견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달 소정의 활동비(2019년 기준 월 150,000원)를 지급 받게 됩니다.

□ 공공후견인의 업무 및 권한(예시)

가. 특정후견 사무

- 1) 주거마련에 관한 사무 후원
- 2)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후원
- 3)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후원
- 4) 각종 교육 및 여가활동 이용에 관한 사무 후원
- 5) 일상생활에 관한 사무 후원
- 6)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후원

나.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 1) 주택임대차, 복지시설이용 계약 등 주거마련과 관련된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에 관한 대리권
- 2) 의료서비스 신청 및 이용(체결, 변경, 종료, 비용지급, 개인정보 신청, 동의 등)에 관한 대리권
- 3)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신청, 수령, 변경, 해지 등)에 관한 대리권
- 4) 각종 교육 및 여가활동 이용(신청, 변경, 해지 등)에 관한 대리권
- 5) 일상생활용품 및 서비스 구매에 관한 대리권
- 6) 은행업무(예금계좌 개설 · 이체 · 입금 · 출금 · 정지 · 해지, 현금 · 체크카드 발급 및 해지, 예금 관련 개인정보조회, 적금, 보험 가입, 각종 변경업무, 적금·보험금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
- 7) 공법상의 신청행위(주민등록·초본 발급,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각종 서류 발급, 인감등록, 인감증명 관련 서류 발급, 개인정보 신청 등)에 관한 대리권

* 위 사무 후원 및 대리권의 범위는 예시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계획

가. 교육 명: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나 일정: 2019. 11. 9.(토), 16.(토), 23.(토), 09:00 ~ 16:00

 2019. 11. 30. (토) 09:00 ~ 18:00

다. 장소: 대구사회복지교육원(대구시 동구 해동로 204 3층 소재)

라. 정원: 총 30명(선착순 접수하되,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외 됨)

마. 수강료: 50,000(중식비 별도) *중식은 따로 제공하지 않음

바. 담당자: 김대언 사회복지사(T.053-428-2173)

사. 교육참가 자격

- 1) 민법 제937조(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참가를 하실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器)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아. 교육과정: 10과목 총 30시간

일 차	교육내용	시 간	비 고
11/9(토)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09:00~12:00 (3시간)	점심시간 12:00~ 13:00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후견인의 직무와 역할	13:00~16:00 (3시간)	
11/16(토)	후견심판절차의 이해	09:00~12:00 (3시간)	점심시간 12:00~ 13:00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13:00~16:00 (3시간)	
11/23(토)	발달장애인의 이해	09:00~12:00 (3시간)	점심시간 12:00~ 13:00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지원결정 지원	13:00~16:00 (3시간)	
11/30(토)	재정관리의 이해	09:00~12:00 (3시간)	점심시간 12:00~ 13:00
	장애인의 인권과 후견인의 윤리	13:00~16:00 (3시간)	
	평가식 및 수료식	16:00~18:00 (3시간)	
실습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시설 등에서 실습	4시간	실습 기관 추후 안내 예정

* 상기교육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교육 수료증 발급 등

- 1)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됨
- 2) 수료 후 대구북부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후견인 후보자 부에 등재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가정법원 요청 시 후견인 후보로 추천됨

3. 교육 수강시 유의사항

가. 교육 참가 신청(※전화접수 불가)

- 1) 대구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홈페이지 참조(<http://daidd.kr>) 참조
- 2) e후견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eguard.or.kr) 신청
(e후견종합정보시스템→회원가입→후견인교육프로그램(대구교육) 신청)
- 3) e후견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대구광역시북부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T.053-428-21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강료 납부교육

- 1) 수강료는 지정된 계좌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2) 대구광역시북부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입금계좌
 - 은행명: 대구은행
 - 예금주: (사)대구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계좌번호: 037-05-003508-8
 - 수강료: 50,000원
- 3) 수강료 영수증은 교육 시작 일에 발급함
- 4) 수강료 환불: 교육실시 3일전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전액 환불함 (환불을 원할 경우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금 통장 사본과 함께 팩스로 송부)

다. 교육 수강전 준비사항

- 신분증 지참(출석확인)/ 교육시간 10분 전 입실 요망
- 라. 교육문의: 김대언 사회복지사(T.053-428-2173, F.053-428-2174)